

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

제정 : 2013. 05. 03.

최근개정 : 2020. 06. 17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목원대학교 대학원(이하 “본 대학원”이라 한다)의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은 법령 또는 교외의 장학기관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제2장 장학금 종류

제3조(장학금의 종류) 본 대학원의 장학금 종류는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한다.

① 교내장학금

- 가. 학업보조장학금
- 나. 공직자장학금
- 다. 모교장학금
- 라. 모교특별장학금
- 마. 외국인장학금[2017.06.28.개정][2019.04.25.일부개정]
- 바. 지역장학금
- 사. 재학조교장학금
- 아. 재직조교장학금
- 자. 주임교수추천장학금
- 차. TA 및 RA장학금
- 카. 신학대학장학금
- 타. 총장격려장학금
- 파. 임원장학금
- 하. 대학원연구생장학금
- 거. 선교사자녀장학금
- 너. 지정기탁적립장학금[2019.04.25.호 신설]

② 교외장학금

- 가. 한국장학재단장학금
- 나. 지방자치단체장학금
- 다. 지정기탁장학금
- 라. 목원장학재단장학금

제3장 장학생 선발 및 지급

제4조(교내장학생 선발기준) 교내 장학생의 선발기준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결정하며 구체적인 선발기준은 별표 1과 같다.[2017.06.28.개정][2019.04.17.일부개정 2020.04.25.2020.06.17.]

제5조(교외장학생 선발) 교외장학생의 선발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교외 장학기관에서 해당 학과 인원을 지정하여 추천을 의뢰한 경우에는 해당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결정한다.
- ② 해당 학과에 대한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교외 장학금 수혜자의 학과 간의 비율을 참작하여 대학원장이 배정하고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결정한다.
- ③ 교외 장학기관에서 수혜자를 지명하여 추천을 의뢰한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.

제6조(장학금 신청자격의 제한)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당해 학기에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.

- ① 근신 이상의 징계 중이거나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
- ② 기타 학칙 및 경고 사항을 위반하여 학원 질서를 저해한 자

제7조(수혜기간 및 장학금액의 제한) 장학금의 수혜 기간은 당해 학기를 원칙으로 하고 석사과정은 4학기, 박사과정은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. (단, 지정기탁장학금 및 대학원연구생장학금은 예외로 한다)

제8조(이중수혜) ① 각종 장학금의 이중 수혜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.

- ② 임원장학금, 신학대학장학금, 총장격려장학금, 주임교수추천장학금, 지정기탁장학금, 대학원연구생자학금, 학업보조장학금 및 근로성장학금은 이중 수혜를 허용할 수 있으나 등록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(단, 지정기탁장학금 및 대학원연구생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할 수 있다.)<개정 2020.6.17.>

제9조(지급시기) 교내 및 교외장학금의 지급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- ① 교내 장학금의 지급 시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 학기 초 학비감면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교외 장학금의 지급 시기는 교외 장학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0조(장학금 지급중지)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지급을 중지한다.

- ① 학칙에 위반하는 행동을 한 사실이 판명될 때
- ② 장학금 신청 절차 또는 신청 사유가 허위로 판명될 때

제11조(기타사항) 위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재가를 받아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05월 03일부터 시행한다.

(경과조치) 이 규정은 2013-1학기부터 적용하되, 학업보조장학금, 재학조교장학금, 주임교수추천장학금은 2013-2학기부터 적용한다.

(2)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7년 06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규정 제91009, 2019.04.25.)

(1)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9년 04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규정 200048호,2020.06.17.일부개정)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개정규정 제4조 및 제8조제2항은 2021학년도부터 시행한다.

(별표 1) 대학원 장학금 선발기준

대학원 장학금 선발기준 (제4조 관련)

구 분		장학금명	선발기준		
교내 장학금		학업보조장학금	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재학생으로 본 대학원의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서류를 제출한 자 일정액 감면		
		공직자장학금	아래 해당 근무자로서 본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. · 직업군인 : 대전·세종·충청지역 근무자 · 정부출연기관, 교육기관 근무자 · 사회복지기관 :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인정한 직종 종사자 수업료의 50% 감면		
		모교장학금	본 대학교 졸업(예정)자로서 본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수업료의 30% 감면		
		모교특별장학금	본 대학교 졸업(예정)자로서 졸업 1년 이내 본교에 입학한 자(대학원위원회 의결에 따라 선발할 수 있음) 일정액		
	외국인 장학금	SIG프로그램 비해당	외국인 유학생으로서, 본교 학과(부) 졸업자 및 국제교육원 한국어 연수과정 수료자가 본 대학원에 입학한 자	TOPIK 5급 이상 (예체능 4급 이상)	입학금 100% 감면
				TOPIK 4급 이상 (예체능 3급 이상)	입학금의 50% 감면
			본 대학원에 신입학 및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. 단, 이중언어과정 유학생 제외.	수업료의 50% 감면	
		SIG프로그램 해당	SIG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본 대학원에 신입학자 (협약에 의한 입학금 감면)	입학금 100% 감면	
	SIG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학교 발전에 공헌한 자		일정액		
		지역장학금	타 대학(원)출신자로서 본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수업료의 20% 감면		
		재학조교장학금	본 대학원 재학생 중 학사행정 등의 업무지원에 위하여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수업료 100% 감면		
		재직조교장학금	본 대학교에 재직 중인 조교로서 본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수업료의 50% 감면		
		주임교수추천장학금	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재학생으로 본 대학원의 지급기준에 해당 일정액		

		하며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	
	TA 및 RA장학금	본 대학원 재학생 중 연구보조, 실습실관리 및 학사행정 업무보조 등으로 학기 내 30시간 이상 근로한 자 (대학원위원회 의결에 따라 선발할 수 있음)	일정액
	신학대학장학금	신학대학발전기금으로 신학특성화를 위하여 신학대학 선발기준에 의하여 선발된 자	일정액
	총장격려장학금	사회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거나 학교의 명예를 선양한 자 및 기타 학교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학생으로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	일정액
	임원장학금	본 대학원 재학생 중 원우회 임원으로 활동하는 자	일정액
	대학원연구생장학금	교내 타 기관에서 자체 장학예산을 배정받아 자체적으로 선발된 자	일정액
	선교사자녀장학금	해외에서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감리교 선교사(목사)의 직계자녀로 본대학원에 재학중인 자	일정액
	지정기탁적립장학금	발전기금 및 장학기금으로 모금되어 적립된 장학금으로 해당 부서의 지급요청에 의해 지급(생활비 장학금 포함)	일정액
교외 장학금	한국장학재단장학금	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지급	일정액
	지방자치단체장학금	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지급	일정액
	지정기탁장학금	기관 및 장학금 기탁자가 정한 기준에 의거 지급(생활비 장학금 포함)	일정액
	목원장학재단장학금	목원장학재단에서 정정 기준에 의거 지급	일정액